

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체육교사연수, 체육특기학생훈련”을 “체육교사연수 및 체육특기학생훈련지원”으로, “학생체육관(이하 “학생체육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함을”을 “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(이하 “학생체육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강동구 잠실1동에”를 “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에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일반에의 개방) 학생체육관은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중 “전항의”를 “제1항의”로, “조례로서”를 “조례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위임규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하고, 동조의 본문중 “이 조례”앞에 “학생체육관의 적제와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

○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 社會教育體育局長입니다.

니다.

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制定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制定事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서울特別市教育監 所管의 體育施設中 室內水泳場, 體育館 등의 施設을 地域住民에게 開放하여 使用토록 함으로써 地域住民에게 心身鍛鍊 및 餘暇善用의 場을 提供하여 教育用 體育施設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, 또한 施設使用에 따른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使用料 徵收 對象 體育施設의 範圍를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에 의한 學生體育館과 室內水泳場, 體育館 등의 體育施設로서 教育監이 指定하는 施設로 하는 것이며, 使用許可 節次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입니다. 또 使用料를 專用 使用料, 練習使用料, 中繼使用料, 商業使用料, 附屬施設使用料 및 入場料로 區分 徵收하도록 하는 것이며, 使用料의 減免, 返還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하는 것이며, 또 이 條例 施行과 동시에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, 第127條, 第130條를 根據로 두고 있습니다.

制定條例案에 대한 구체적인 事項은 별첨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1. 제정경위

본 조례(안)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